

병원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계 시사점

들어가며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어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외부인이 전혀 알 수 없다. 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혹은 대리수술,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가해졌을 경우 이를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부의 불법행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점점 저하되었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입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세 번째로 발의된 법안은 2021년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향후 2년 동안 하위법령이 마련된 이후 2023년 9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욕창 악화와 방치, 폭행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병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발단과 의료법 개정과정, 주요 쟁점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요양병원의 병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의 진행과정을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서 향후 방향을 잡아보았다.

발단

2014년 12월 28일,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며, 환자 가슴에 삽입할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 논란이 되었다.¹⁾ 2016년 9월 8일,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동시에 많은 수술을 진행하다가 환자가 방치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의료사고도 발생하였다.²⁾ 2018년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진행하면서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뇌사판정을 받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³⁾ 이처럼 비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환자 안전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림 1〉 수술 중 열린 생일파티와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는 모습
(뉴데일리경제. (2014년 12월 29일)
URL: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4/12/29/2014122910032.html>)

의료법 개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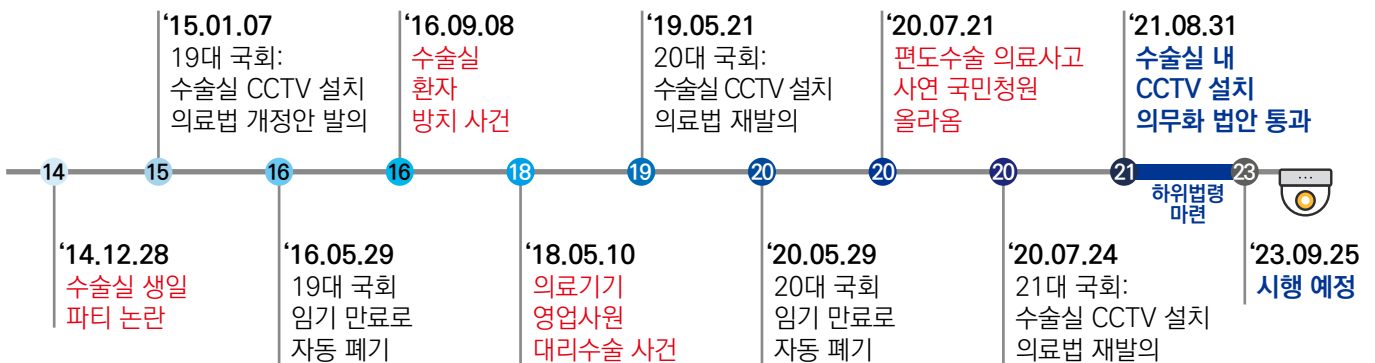
2015년 1월 7일,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였다.⁴⁾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논의되지 못하고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2019년 5월 21일, 제20대 국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대리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술실에 CCTV를 설치 법안을 재발의 하였다.⁵⁾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되지 못하고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20년 7월 21일, 어느 한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CCTV 법안이 재조명되었다. 2020년 7월 24일,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 불법 의료 행위, 성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재발의하였다.⁶⁾ 2021년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⁷⁾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제38조의 2, 수술실 내 CCTV의 설치·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2023년 9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⁸⁾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또는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와 의료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사용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이 분실되거나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접속기록 보관 및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사 및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중재원이 조정 및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거나, 환자 및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촬영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촬영한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림 2〉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과정

주요쟁점 ⁹⁻¹¹⁾

가. 전신마취 여부를 기준으로 정한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의 범주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은 수술실 여부보다 전신마취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향후 전신마취 수술의 범주와 내시경 시술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나.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중 촬영을 요구해도 응급 수술, 고위험 수술 또는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실효성

외과 의사들은 전신마취 수술 대부분이 중증 수술이고 CCTV 설치 대상 병원의 상당수가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일선의 병원에서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CCTV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하위법령에서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예정이다.

다. CCTV 촬영 영상 보안조치에 의료계의 의견 반영 여부

국회는 의료계가 제기한 CCTV 촬영물 유출 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기기를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CCTV로 제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촬영한 영상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 CCTV설치 비용, 지자체의 지원 여부

의료계는 CCTV 설치비용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지자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 줄지 의문이다.

마. CCTV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 권한 여부

촬영 영상을 열람하는 조건에서 의료중재원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CCTV 영상 요청을 강제화한 내용은 현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어 세부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할 때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정 분쟁 시에만 열람이 가능한 열람 조건은 영유아 보호법 등의 형평성과 수술실 CCTV 입법 목적에 적절하지 않으며 환자권리를 제한한다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주장도 있어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논의가 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찬성하는 입장

1) 환자단체연합회·시민단체 ¹²⁻¹⁴⁾



의료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소수의 범죄 의사를 의료계에서 추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자와 의사 간 오해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¹⁵⁾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 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

3) 더불어민주당¹⁶⁻¹⁷⁾

현재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환자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반대하는 입장

1) 대한의사협회¹⁷⁻²⁰⁾

CCTV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공익적 효과보다 의사의 소극진료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침해, 불필요한 의료분쟁 발생, 환자 비밀유지의 어려움과 영상 유출 가능성 등과 같은 역기능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또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필수요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된다.

2) 대한병원의사협회²¹⁾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꼭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대한전공의협의회²²⁻²³⁾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수련환경 개선이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답은 아니다. 수술실 입구를 촬영할 수 있도록 CCTV를 통로에 자율적으로 설치하거나, 의사윤리 의식 강화, 내부 고발 등 자율징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CCTV설치 대신 수술실 블랙박스를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4) 외과 전공의²³⁻²⁴⁾

수술 후 예후를 고려해 많은 의사가 고난도, 중증수술을 피할 것이며 특히, 외과계를 꺼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향후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 부족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의료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및 보호자가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련기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보완관리에 있어 의료기관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가 고통 받을 수 있다.

5)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²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의료행위가 위축되면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



국내·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사례

가. 국내 사례 ²⁶⁻²⁷⁾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참여한 의료기관 중에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32개소로 11.7%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 치과병원이 42.8% (14개소 중 6개소)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종합병원은 305개소 중 65개소로 21.3%를 차지하였다. CCTV를 설치한 병원 중에서 67.9%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출입자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의료분쟁에 대응하거나 환자 요청 시 제공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병원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CCTV를 설치한 병원 중에서 61.4%에 해당하는 병원에서는 CCTV 녹화영상을 통해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환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수술 행위까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9.7%로 현저히 낮았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힘찬병원에서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힘찬병원 의료진 147명과 수술환자 및 보호자 101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사와 환자 간 신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술실에 CCTV 설치 후 한 달 넘게 운영해본 결과, 의료진들이 위축되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응답이 17.1%가 나왔으며,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5%를 차지하였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술하는 장면을 녹화할 때 우려하는 사항으로 신체노출에 대한 문제와 영상 유출 등 보안문제가 걱정된다는 응답이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외국 사례 ²⁸⁻²⁹⁾

미국,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국가를 살펴보면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한 사례는 없다. 특히, 유럽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비밀 유지 문제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논의된 사례가 없었고, 오히려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위스콘신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수술실 감염 위험, 환자 비용 부담 문제 등 여러 쟁점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몇몇 의료기관에서 수술 중 의료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의 규제기준을 따라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진 간 대화, 환자의 활력징후, 수술 부위 이미지 등 수술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함께 설치하는 곳도 있다.

문제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수술실에 CCTV 촬영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료의 본질 훼손,²⁵⁾ 의료진들의 권리와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유린,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료법 위반,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21), 30-31)} 또한, 인터넷에 'naked operating room'이라고 검색해보면 환자분들이 벗은 상태로 수술 받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수술실 CCTV 영상이 누군가의 악행에 의해 유출될 경우 환자들에게 평생 큰 상처를 안겨드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³¹⁻³²⁾

또한, 장시간 수술하는 경우 CCTV를 의식하여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들이 제한되면서 의료진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수술을 하는 등 최적의 수술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³³⁻³⁵⁾ 또한, 인턴 및 레지던트의 수술 참여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 된다면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22),36)} 더 나아가 의료진들 사이에서 수술이 많은 외과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도 심해지게 되면서 향후 필수 인력난이 일어나 환자분들이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32), 37)}

마지막으로 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수술실 내 CCTV를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CCTV 녹화영상만으로 의료사고가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분쟁과 수술 예후에 따른 의료소송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²⁴⁾ 이러한 문제들을 의료계에서 제기하면서 면허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면허관리원 추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완 등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이외 다른 대책들을 제시하였다.³⁸⁾ 그러나 불법의료행위를 예방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양병원의 병실 내 CCTV 설치 법안

가. 발단

2018년부터 3년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폭언, 방치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언론을 통해서도 논쟁거리가 되면서 요양병원 병실 내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³⁹⁾

2018년 3월 24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환자가 자주 돌아다니고 소변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어왔고,⁴⁰⁾ 10월 29일에 어느 한 요양병원에서 식사시간에 환

자가 음식을 뱉었다는 이유로 간병인이 80대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국민청원에 게시되었다.⁴¹⁾

2020년 5월 18일, 어느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이후 면회가 금지되고 담당 간병인도 바뀌는 상황에서 환자가 계속 방치되어 꼬리뼈가 보일 정도로 욕창이 더 심해진 사연도 국민청원에 게시되었다.⁴²⁾ 이후에도 요양병원에서 치매, 1급 지체장애인 등의 환자에게서 폭행 흔적이 발견되는 사례들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³⁸⁾

나. 발의된 개정안 내용⁴³⁾

- 입원환자에 의한 의약품 투여 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입원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환자 안전과 요양병원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만약,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 및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보호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CCTV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환자와 요양병원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요양병원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법규에 맞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고, 환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해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환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 CCTV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환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호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업무수행하기 위해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만약,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요양병원 개설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와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나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병원 개설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병원에 설치한 CCTV 설치 및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환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한다.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다. 개정안에 대한 입장³⁸⁾

1)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호자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의약품 투여 내용 등 진료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요양병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2) 대한요양병원협회

극히 일부의 일탈이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비,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병원 병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기저귀 교체, 탈의, 회음부 처치 등으로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감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단순히 치매 환자나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환자들도 함께 입원하고 있어 공익보다 개인의 권리침해가 훨씬 클 것이다.

또한, 요양병원 CCTV 설치법안은 선량한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3) 대한의사협회

단순히 환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병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의료인과 환자 및 보호자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과 초상권, 개인정보 등의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인권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 투자에 대해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책임을 모든 요양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과하다.

끝마치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의 문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보면서 의료진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져 있음을 본다.

불법의료행위와 중대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수술실 CCTV 설치가 최적의 답인가? 외국의 사례에서도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 사례는 없다. 세계 의사회에서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행위가 위축되면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의료계가 이러한 사건 등에 얼마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볼 때 오히려 지금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회에서는 자율적인 시정과 규제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고 계속 같은 사건들이 반복하여 발생하면서 결국 법률적인 규제를 받게 되었다. 전문가에 대한 불신은 결국 의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수술 등 위험한 분야의 위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중증 수술을 피할 것이며 결국 외과계의 쇠퇴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환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법의 미세조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 건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요양병원의 열악한 환경, 일당정액수가제도, 간병제도의 비급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미정립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가 요양병원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지만, 제도의 탓만으로 돌리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들의 노력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요양병원 종사자들도 많다. 그러나,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케어를 해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인권과 삶을 존중하는 요양병원이 많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통과과정을 보면서 요양병원도 자칫하면 병원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행과 방치, 무분별한 신체 구속 등 반인권적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을 위한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요양병원은 2012년부터 의무인증으로 전환되면서, 인증의 기준에 환자안전과 낙상사고,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었고, 대한요양병원협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며, 요양병원의 인권과 윤리문제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 자체적인 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결국 외부적인 규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CCTV 설치에 대한 입법안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없다면 결국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안전이란 목적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환자들의 사생활과 인권의 문제, 병원종사자들의 자부심이 손상 받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도적인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도, 요양병원이 노인요양을 위한 노력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환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요양병원들의 자발적이고 우선적 노력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
손에리 연구원

참고문헌

- [1] 조안나. (2014.12.29.). 수술중 생일파티 엮기행각 '막장 성형외과' 강남 어디?. 뉴데일리경제. (2019.09.03.). Retrieved from: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4/12/29/2014122910032.html>
- [2] 김경애. (2018.11.22.). 시민·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위해 국회 발결음. medifonews. (2019.09.03.). Retrieved from: <https://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2257>
- [3] 차근호. (2018.09.07.).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종합). 연합뉴스. (2019.09.03.).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7010051051>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2015.01.07.). 의안번호3568 국민참여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019.05.21.). 의안번호0543 국민참여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2020.07.24.). 의안번호2382 국민참여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
- [7]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8&bbs_num=51786&no=8260
- [8] 의료법 제38조의2(2021.9.2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 [9] 이지현. (2021.08.30.). 오늘 수술실 CCTV법 결판...내용과 쟁점은?. MedicalTimes. (2021.09.03.). Retrieved from: <http://m.medicaltimes.com/News/1142593>
- [10] 이창진. (2021.09.01.). 의료단체, CCTV법 연이은 규탄 "모든 책임은 국회·정부". MedicalTimes. (2021.09.03.). Retrieved from: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42688>
- [11] 고재우. (2021.09.03.). 수술실 CCTV 코너 몰린 의원 "개정안 시행령 주시". dailymedi. (2021.09.03.). Retrieved from: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3769&thread=22r02>
- [12] 장진웅. (2021). "진료 위축" VS "불신 해소" 팽팽...국회로 공 넘어가. 대전일보. (2021.09.04). Retrieved from: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2706
- [13] 안종기, 안덕선. (2019). 수술실 CCTV 설치. 한국법제연구원. 64. 58-60.
- [14] 엄태성. (2021.04.28.). 환자단체들 "cctv, 수술실 입구 아닌 내부에 의무설치돼야". news the voice for healthcare. (2021.09.02.). Retrieved from: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96>
- [15] 이승덕. (2021.07.05.). "국회는 수술실 CCTV 내부설치법 즉각 처리해야". 의학신문. (2021.09.06). Retrieved from: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114>
- [16] 이정환. (2021.05.27.). "의사 국민신뢰 추락, 수술실 CCTV 입법 근원". 데일리팜. (2021.09.14). Retrieved from: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76731>
- [17] 손락훈. (2021.06.19.). 수술실 CCTV 설치, 여·야 찬반 '팽팽'. medifonews. (2021.09.07). Retrieved from: <http://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61093>
- [18] 신형주. (2021.06.02.). 실효성 질타 받은 의료계 수술실 CCTV 대안...의병협 다음 카드는?. Medical Observer. (2021.09.08). Retrieved from: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07>
- [19] 이승우. (2021.06.24.). 수술실 CCTV 설치법 '연기'는 했지만...개운치 않은 '뒤틀'. 의학신문. (2021.09.08). Retrieved from: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22>
- [20] 정윤식. (2021.08.31.). 대한민국의료역사에 오점... "끝까지 맞설 것". 병원신문. (2021.09.01.). Retrieved from: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97>
- [21] 임술. (2021.06.19.). 대한병원 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정책 폐기해야 마땅". Medi:Gate NEWS. (2021.09.08). Retrieved from: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07115954>
- [22] 이재원. (2021.06.18.). 의료계,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저지에 총력전. 의학신문. (2021.09.07). Retrieved from: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115>
- [23] 홍완기. (2019.05.31.). 외과계 전공의 84.4%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학신문. (2021.09.13.). Retrieved from: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37>
- [24] 이창진. (2021.09.02.). CCTV법 통과에 허탈해지는 외과의들... "소송만 늘 것". MedicalTimes. (2021.09.02.). Retrieved from: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42703>
- [25] 고재원. (2021.07.0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배경과 쟁점. 동아사이언스. (2021.09.03.).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7621>
- [26] 강성규. (2020.09.21.).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 14%... 설치 의향도 15% 불과. 아시아타임즈. (2021.09.22). Retrieved from: <https://www.asiatime.co.kr/1065578195907734>

참고문헌

- [27] 서정윤. (2021.08.12.). '녹화 자체 믿음이 간다' 수술실 CCTV 만족도 80%. 매경헬스. (2021.09.22). Retrieved from: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75>
- [28] 백영미. (2021.06.22.). [수술실CCTV해법]美·캐나다도 '뜨거운 감자'...도입은 미지수. NEWSIS. (2021.09.15). Retrieved fr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2_0001485023
- [19] 김민지. (2019).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20(1). 109-132.
- [30] 이필수. (2020.12.22.). 수술실 CCTV 설치 중대한 인권침해. 의협신문. (2021.10.23.). Retrieved from: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69>
- [31] 문지호. (2021.08.24.).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의협신문. (2021.10.23.). Retrieved from: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095>
- [32] 연준흠. (2021.09.02.). 수술실 마취과 교수가 바라본 cctv법의 후폭풍. MedicalTimes. (2021.09.05.). Retrieved from: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42729>
- [33] 송성철. (2021.06.17.). 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기구 구성" 제안. 의협신문. (2021.09.29) Retrieved from: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44>
- [34] 조영아. (2021.05.26.). 진료위축? 의협반대 뚝! '수술실CCTV' 이번엔 처리?. MBC 뉴스. (2021.09.13). Retrieved from: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90055_34936.html
- [35] 이승우. (2021.05.26.). 국회, CCTV 수술실 설치 "인권보호" vs "인권침해". 의협신문. (2021.10.05). Retrieved from: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14&sc_word=%EC%88%98%EC%88%A0%EC%8B%A4&sc_word2=
- [36] 고정민. (2021.09.02.). CCTV 설치법이 불러올 수련환경 변화 대비해야. 청년의사. (2021.09.05.). Retrieved from: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24>
- [37] 고정민. (2021.09.15.).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발길 들리는 외과 지원자들... "기피 심화". 청년의사. (2021.09.13). Retrieved from: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602>
- [38] 신형주. (2020.10.27.). 요양병원 CCTV, 환자 불안 해소와 인권 무엇이 우선돼야 하나? MEDICAL Observer. (2021.10.28.). Retrieved from: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57>
- [19] 청와대 국민청원. (2018.03.24.). 요양병원의 각 병실과 복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청원!. (2021.10.28.). Retrieved fro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3716>
- [40] 청와대 국민청원. (2018.10.29.). 요양병원, 요양소, 요양원에 노인학대 방지 CCTV 설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2021.10.28.). Retrieved fro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4363>
- [41] 청와대 국민청원. (2020.05.18.). 면회금지 기간동안 병원에서 방치된 저희할머니.. 몸에 구멍이 나서 꼬리뼈가 보입니다. (2021.10.28.). Retrieved fro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989>
- [42] 이준엽. (2021.10.15.). 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흔적에도... "CCTV없어 오리무중". YTN. (2021.10.28.). Retrieved from: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160512542370
- [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20.09.18.). 의안번호4026. 국민참여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